

# 항공우주추진연구센터 규정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 항공우주추진연구센터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** (명칭 및 소재지) 본 연구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 부속 항공우주추진연구센터(이하 '연구센터'라 함)라 칭하고,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함)내에 둔다. 본 연구센터의 영문 명칭은 Aerospace Propulsion Research Center (APRC)이다.

**제2조** (목적) 연구센터는 항공우주 추진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을 연구하여 국가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, 학술 교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** (사업) 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항공우주 추진에 관한 이론과 응용 연구
- ② 항공우주 추진에 관한 자료 수집, 정리, 조사, 자문
- ③ 산학협동연구, 위탁연구, 과제연구 등의 연구용역 수행
- ④ 간행물 발간, 연구 발표, 강연회 개최
- ⑤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구 교류, 공동 연구, 기술 지도
- ⑥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** (조직) ① 연구센터에는 운영위원회와 2개의 연구부를 둔다.

② 연구센터에 소정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다음의 연구부를 둔다.

- 1. 항공추진 연구부
- 2. 우주추진 연구부

③ 각 연구부장은 책임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연구부의 설치와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센터장이 시행한다.

④ 각 연구부에는 관련 연구실을 둘 수 있다.

**제5조** (임원 및 임무) ① 연구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며, 부센터장 1인, 간사 1인,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본 대학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
③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부센터장과 간사는 연구센터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부센터장은 소장 부재 시 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, 대내 업무를 담당한다.

⑥ 간사는 연구센터 행정처리 및 실무사항을 수행한다.

⑦ 감사는 회계 연도 말에 연구센터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,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**제6조** (연구원) 연구센터는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연구조원, 특별연구원을 둘

수 있고 필요시 센터장이 위촉한다.

1. 책임연구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
2.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.
3. 연구원은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한다.
4. 연구조원은 본 대학교에 학사과정 이상 학생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.
5. 특별 연구원은 연구센터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외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위촉한다.

**제7조** (행정요원) 연구센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.

### 제 3 장 운 영

**제8조** (운영위원회) 운영위원회는 연구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며, 센터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**제9조** (운영위원회 구성)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, 부센터장 및 간사로 구성하며, 임명직 위원은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되,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
**제10조** 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
- ② 연구과제의 선정
- ③ 연구계획, 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, 평가
- ④ 연구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⑤ 기타 본 연구센터 운영상의 중요 사항

**제11조** (회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4 장 재 정

**제12조** (재정) 연구센터의 재정은 자체수입금, 대학에서 책정한 연구센터 예산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**제13조** (회계년도)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14조** (규정준용) 이 규정에서 준용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제 5 장 기 타

**제15조** (시행세칙)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